

# “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” 2023 정부 업무보고



## 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 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고 일시	업무보고 사후브리핑 시작시 (별도공지)	배포 일시	2022. 1. 9.(월)
담당 부서 <총괄>	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 홍경의 (044-202-7026)
		담당자	서기관 백석현 (044-202-7027)
			사무관 신슬원 (044-202-7028)

## 노동 개혁,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흔들림 없는 전진 -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 -

### 2023년은 공정과 법치의 노동개혁 원년!

#### 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, 성공적으로 완수하겠습니다.

-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,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노사부조리 상시 감독 및 제도개선 등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불법·부당관행 개선
-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파견제도 선진화, 노사대등성 확보, 근로시간 선택권·건강권 제고 등 공장제 중심 낡은 노동규범을 현대화
-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핵심수단으로 감독, 컨설팅, 기술지도, 취약분야 지원 등 산업안전 시스템과 법령을 전면 개편

#### ② 노동시장 약자보호를 위해 이중구조를 해소하겠습니다.

- 세대, 업종, 기업 내·간 등 상생형 임금체제로의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「상생임금위원회」를 구성하고 우수모델 발굴·확산
- 조선업 원하청 상생모델을 구축하고 타업종으로 확산하여, 업종단위 모범적 상생과 연대의 산업·노동 생태계 조성
- 노무제공자 권리보장 입법, 5인미만 근기법 등 법적 사각지대 해소

↳ 즉시 시행과제는 1월, 근로시간 등 구체화된 과제는 2월,  
사회적 논의 필요과제는 경사노위 논의 등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

#### ③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겠습니다.

- 업종·지역별 맞춤형 밀착 지원, 외국인력 활용 확대, 첨단산업 분야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구인난 해소
- 범부처 일자리TF 가동 등을 통해 고용상황별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, 취업지원 중심 고용안전망 개선 등 중장기 정부일자리 대책 수립

고용노동부는 1.9.(월)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.

고용노동부는 “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”을 비전으로 설정하고, ①법치 기반의 노동 개혁, ②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, ③ 노동시장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.

## 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 개혁, 성공적 완수

### 우리 노동시장은...

- ▶ 법 경시 풍조, 노사갈등 시 과도한 정부 의존 등 불합리한 관행 지속
- ▶ '53년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이 큰 변화없이 70년간 유지되는 등 낡은 규범 잔존

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노사 법치추진을 확립하겠습니다.

[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] 노동조합이 시대변화에 발맞춰 사회적 위상에 걸맞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한다. ✓자율점검 기간('22.12.29~'23.1.31)을 차질없이 운영하는 한편,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·전문성 제고 등 회계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✓노동조합법 시행령도 즉시 개정에 착수(3월)한다.

아울러, ✓「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」도 3분기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되, 노동조합의 자율적 공시를 유도하면서 공시 대상·항목·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법제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(2월 개정안 발의).

[불법·부당한 관행 개선] ✓1월 20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에 「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」를 운영한다. 폭력 등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, 노동조합 재정 부정사용,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노사의 불법·부당행위 전반이 신고대상이며,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도·점검 및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. 아울러, 이러한 ✓불법·부당행위에 대한 규율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(2월 개정안 발의).

[5대 불법·부조리 근절] ①포괄임금 오남용, ②임금체불, ③부당노동행위, ④불공정 채용, ⑤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시장의 5대 불법·부조리 근절을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제도개선도 병행한다.

특히, 공짜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등의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월 중 마련할 예정이며,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 서도 신용제재·정부지원 사업 제한 등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(1분기).

아울러, 채용상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부정채용 금지 및 제재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.

유형	추진내용
① 포괄임금 오남용	▶ <b>역대최초 기획형 수사감독</b> (1~3월) ▶ 공짜야근 등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 마련(1분기)
② 임금체불	▶ 취약시기·계층 집중지도 ▶ <b>상습체불 제재강화</b> 등 제도개선 * 정부지원 사업 제한, 신용제재 등
③ 부당노동행위	▶ <b>상시적 감독체계 구축</b> ▶ <b>수사역량·기법 고도화</b> 등 수사 강화방안 마련
④ 불공정 채용	▶ <b>분야별 집중점검</b> (상·하반기) ▶ <b>현장점검, 직권조사 강화방안</b> 마련
⑤ 직장내 괴롭힘	▶ <b>취약업종</b> (보건, IT 등) <b>컨설팅</b> ▶ <b>소규모사업장 예방교육 강화</b> (6,500개소) ▶ <b>반복 위반 사업장 신속 제재</b> (즉시 과태료)

일하는 방식과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변화하는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겠습니다.

[근로시간 제도 개선]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재 주 단위에서 최대 연단위까지 다양화하고,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대상 3개월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,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 건강권 보호 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. 2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.

[근로자대표 제도 개선, 파견제도 선진화 등]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 절차와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, 사업장 내에서 특정 직군·직종 근로자가 근로시간 제도 등 자신에게 맞는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부분 근로자 대표제도도 도입한다.

파견근로자 차별해소, 파견대상업무 확대, 현장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파견-도급 구별기준 법제화 등 ✓파견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·제도 개선을 추진하고,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을 위해 ✓대체근로와 함께 노조설립, 단체 교섭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. 1월부터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 연구회를 구성·운영하고,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한다.

**근로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고,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축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.**

[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] ✓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집중지원한다. 추락·끼임·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을 집중점검하고(1만개소), 50인 미만 소규모·제조업 사업장에는 위험공정개선을 집중 지원한다(4,820억원).

✓‘위험성평가\*’를 핵심 예방수단으로 확립한다.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`25년 5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, 소규모 기업에는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제공한다.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위험성평가 적정성 등을 엄정 수사한다.

\*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·이행하는 제도

✓참여와 협력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한다.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(연내 법개정), 안전수칙 반복 위반 근로자 제재 절차 신설 등 안전보건관리규정 표준안을 정비한다.

[산업안전 관계법령 정비] 1월부터 전문가 TF를 운영하여 「중대재해처벌법」의 1년 간의 시행 성과를 평가하고, ✓처벌요건 명확화 및 제재 방식 개선 등 법 개정을 추진한다.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또한 기술변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현장성 있게 정비\*한다.

▲기술변화에 따라 안전보건규칙 단계적 현행화(1월 입법예고) ▲기업이 재해예방 역량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적합·불합리한 노후 규정을 폐지·개선 ▲안전보건규칙 중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규정은 처벌규정 유지(법규성), 선택적 사항은 예방규정 전환

[산업안전 규제 과학화·산업화] 스마트기술 안전장비 개발·보급사업(신규 250억원)을 시행하여 ✓안전보건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, 일터 안전보건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는 등 6월 중 「안전산업 기반조성 및 육성 방안」을 마련할 예정이다.

\* 교육, 기술지도, 인재양성, R&D 지원근거 마련 등

## ②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이중구조 개선

우리 노동시장은...

▶ 대기업·정규직 노조 중심, 이동성 제약 및 격차 발생으로 이중구조 심화

**상생과 연대의 산업·노동 생태계를 조성하여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겠습니다.**

[상생형 임금체계 개편] 노사관계, 노동법 등 학자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✓「상생임금위원회」를 1월 중 발족한다. 임금체계 개편과 격차 해소를 촉진하기 위한 법·제도·정책 개선방안과,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차등화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한다.

아울러, 인사·노무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도 직무·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확대하고, ✓임금정보시스템을 연내 구축하여 업종·직종별로 노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.

[원하청 상생모델 확산] 2월까지 조선업 ‘상생협력 실천협약’을 체결하고, 정부는 안정적 인력수급, 공정거래질서 확립, 임금·복지 격차 완화 등 관련 정책 패키지를 지원함으로써 ✓‘조선업 상생모델’을 구축한다.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✓타 업종을 선정하고 확산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.

[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] ✓노무제공자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과 함께, ✓근로기준법도 근로자 인격권 보호를 중심으로 사업장 부담을 고려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단계적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. 아울러, ✓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교대상 근로자 범위 확대, 신청기간 연장 등을 추진한다.

한편,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.

### 3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

우리 노동시장은...

- ▶ 초고령사회 진입(‘25°), 급속한 디지털화 등 산업·인구구조 변화에 직면
- ▶ 경기 위축이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 불확실성 증가

올해, 경기침체 등에 따라 일자리 불확실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만큼,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혁신 직업훈련을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핵심인력 양성을 확대하겠습니다.

[업종별 취업지원허브 신설 등] 지역을 넘어 산업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반도체·조선업에 「업종별 취업지원허브」를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인력수요를 신속히 파악·지원하고, 향후 IT·자동차·바이오 등으로 확대한다.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뿌리산업 등 상시 인력난을 겪는 업종을 밀착 지원하는 신속취업지원TF(17개소)도 지속 운영한다.

금년부터 「기업·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」를 본격 시행\*하여 기업·구직자의 채용·취업 애로사항을 해소한다.

\* (‘22) 시범 15개소 → (‘23.상) 1차 확대(각 12개소) → (‘23.하) 2차 확대(전국 48개 센터)

[현장형 핵심인력 신속양성] 선도기업과 혁신훈련기관을 활용한 혁신 훈련 분야를 기존 디지털 분야에서 반도체·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까지 확대하고 양성규모도 3.6만명으로 늘린다. 이외에도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신설(5개소) 및 디지털 분야 공동훈련센터를 추가 설치(+15개소, 20 → 35개소)해 대기업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 공동훈련 지원도 강화한다. 이와 함께 우리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계·전자 등 국가기간·전략산업 직종에 대한 훈련도 확대한다(‘22년 3,506억원 → ‘23년 4,648억원).

디지털

인공지능, 클라우드, IoT, 메타버스, 5G·6G  
일반SW, 블록체인, 빅데이터, 사이버보안



첨단  
산업

지능형로봇·드론, 시스템반도체, 3D프린팅,  
차세대디스플레이, 바이오헬스, 에코업, 신재생에너지,  
이차전지, 첨단소재

[외국인력의 유연한 활용 지원: 고용허가제 20년만에 개편] 올해 ✓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을 도입하면서 ✓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허용 한도 상향(20%)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. 또한,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도 확대한다. ✓일반 고용허가제(E-9)는 폐기물 처리업 등으로 확대하고, ✓방문취업 동포(H-2)는 허용 업종 선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\*으로 변경하였다.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도를 높인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✓장기근속 특례제도를 신설하여 출국·재입국 과정없이 국내에 10년 이상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.

\* 고용 허용업종 지정·나열방식(포지티브 방식) → 제외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(네거티브 방식)

**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장벽을 제거하고 일자리 기회를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.**

[청년: 일경험 확대] 청년들의 ✓일경험 유형을 다양화(기업탐방·프로젝트·인턴십)하고, 참여인원을 확대한다(1→2만명). 니트 방지를 위해 ✓구직단념 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(1~2개월 → 5개월),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도전준비금을 신설한다.

[여성: 경력단절 → 경력유지]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✓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 → 1.5년으로 확대하고\*, ✓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자녀연령(만8세 → 만12세)과 사용기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.

\* (예시)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 확대

[고령자: 계속고용] ✓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한다. 사회적 논의시 계속고용 방식 및 시기, 임금·직무 조정 근거 마련, 기업·근로자 지원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포함한다. 이와 함께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✓계속고용장려금('22년 3천명 → '23년 8.3천명)을 대폭 늘려 지원한다.

[장애인: 양질의 일자리 확대] 대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산을 위해 ✓설립제한 규제(예: 상호출자제한, 금산분리 등) 완화를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하고, ✓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상품 우선구매비율도 상향(0.6 → 0.8%)한다. ✓출퇴근비용 지원대상 확대(3.9천명 → 15천명) 등 장애인 근로자가 일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.

취약계층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호는 ‘일을 통한 자립’ →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으로 고용안전망을 개선하겠습니다.

[급여지원 → 서비스 중심, 재취업기능 강화] ✓실업급여 수급자의 허위·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맞춤형 재취업서비스로 조기 취업을 촉진하고, 반복수급자 급여 감액을 통해 수급자의 취업활동을 강화하는 한편, ✓실업급여 제도 전반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. ✓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일정수준 이상 소득 발생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해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충분한 일자리 탐색 기회를 보장하고, 조기취업성공수당을 확대하여(조기취업시 잔여수당의 50% 지급) 근로의욕을 높이고 빠른 취업을 유도한다.

이를 위해 고용-복지 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✓고용서비스 통합 네트워크 4개소를 시범 운영하고, 구축을 추진 중인 「(가칭)고용24」의 신속한 개통을 추진할 예정이다.

위와 같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기존 “급여 중심의 서비스”에서 “취업지원, 근로의욕 촉진”으로 전환에 방점을 둔 ✓「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」을 1월 중 발표 예정이다.

[퇴직연금 기능 강화]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, 중도인출 제한 등을 통한 연금성 확대, 취약계층 재정·세제지원 내용 등을 담은 ✓「퇴직연금 기능 강화방안」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.

금년 상반기 고용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기상황에 미리 대비하면서, 산업·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미래 일자리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.

[컨틴전시 플랜 가동]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범정부 ✓「일자리 TF(고용부·기재부 차관 공동주관)」를 운영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사업을 총괄 점검하며, ✓고용상황이 악화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(Contingency Paln)을 즉시 가동한다.

1 단계	기존사업 조기집행	2 단계	재직자 고용유지	취약계층 생계안정	재취업 지원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려금 신속 집행</li> <li>직접일자리 조기 착수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용유지지원금 확대</li> <li>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구직급여 신속 지원 확대</li> <li>위기지역·업종 지정에 따른 고용·산재보험 납부유예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</li> <li>실업자 취약계층 훈련 확대</li> </ul>

[근본적 체질 개선] 산업·인구구조 전환에 대비한 미래 일자리 대응 체계 구축, 단기 일자리 지원 축소 및 고용서비스·직업훈련 투자 확대 등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담은 「고용정책 기본계획」을 1월 중 수립·발표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	책임자	과장	홍경의 (044-202-7026)
		담당자	서기관	백석현 (044-202-7027)
		담당자	사무관	신솔원 (044-202-7028)
<고용총괄>	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	책임자	과장	홍정우 (044-202-7210)
		담당자	사무관	홍유란 (044-202-7212)
<고용서비스>	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과	책임자	과장	엄대섭 (044-202-7327)
		담당자	사무관	정누리 (044-202-7329)
<노동>	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	책임자	과장	김수진 (044-202-7587)
		담당자	사무관	박성훈 (044-202-7589)
<산업안전> 취약분야지원, 법령·산업 등	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	책임자	과장	오영민 (044-202-8804)
		담당자	사무관	김남균 (044-202-8805)
<산업안전> 위험성평가, 감독·점검 등	산업안전보건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	책임자	과장	양현수 (044-202-8901)
		담당자	사무관	김원빈 (044-202-8903)
<고령자 등>	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	책임자	과장	김부희 (044-202-7454)
		담당자	사무관	김우형 (044-202-7457)
<청년>	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	책임자	과장	박희준 (044-202-7440)
		담당자	사무관	김송이 (044-202-7417)
<직업훈련>	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	책임자	과장	권진호 (044-202-7269)
		담당자	사무관	김은화 (044-202-7272)

# 2023년은 공정과 법치의 노동개혁 원년!

## 1 노동개혁 완수

### 노사 법치주의 확립

노조 회계  
투명성 제고

불법·부당  
관행 개선

채용 공정성  
개선

5대 불법·  
부조리 근절

### 노동규범 현대화

근로시간 노사 자율적 선택권과 건강권 보호 확대 \*2월 입법 예고  
추가개혁과제 파견제도 선진화, 노사관계 대등성 확보

### 중대재해 회기적 감축

- ✓ 소규모 제조업 등 취약분야 집중 지원
- ✓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엄정책임 확립
- ✓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 등

##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

## 2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

### 상생형 임금체제 개편

「상생임금위원회」 설치  
임금격차 실태조사·공표, 정책권고, 우수기업 인센티브 방안 마련

### 상생과 연대의 산업·노동 생태계 조성

- ✓ 조선업 '상생협력 실천협약' 체결 및 정부패키지 지원 → 타업종 확산
- ✓ 이중구조 개선 종합대책 마련 \*3월

###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

- ✓ 노무제공자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 추진
- ✓ 근로자 인격권 보호 중심 5인미만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추진

## 3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 대응

### 기업구인난 해소

- ✓ 업종·지역별 맞춤형 취업지원
- ✓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인력 신속 양성
- ✓ 외국인력의 유연한 활용

### 취약계층 일자리 장벽 제거

청년 일경험 확충	여성 맞돌봄 활성화	고령자 계속고용	장애인 고용 확대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-

고용안정망 개선 구직활동 취업지원 강화, 조기취업 유도

### 고용상황 대응

단기 컨틴전시 플랜(Contingency Plan)  
중장기 체질개선: 「고용정책 기본계획」 수립